

第20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7.8.27. ~ 8.2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0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3
II.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
III.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3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	21
2.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	23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1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	91
5. 조례심사보고서 .....	95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8월 27일 (월요일) 11시 00분

## 開會式順(第206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8월 27일 (월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 부의장 광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성영용 의장님께서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단 협의회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8월중 인사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곽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8월 1일자 정부인사에 따라 교육 인적자원부 운영팀장으로 전보한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후임으로 발령된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임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청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

1972년 교육계에 투신한 이래 청원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부 학술연구지원과, 대학재정과, 공보관실 등에서 근무하다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서울대 복지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우리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으로 재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생회관장으로 재직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된 김용환 서기관입니다.

그 동안 중앙 부처와 일선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곽정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김주환 초등교육과장님께서 학습컨텐츠 활용 세미나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과보고**

● **부의장 곽정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정명환**

의사과장 정명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전접수 상황 및 도의회 안건 처리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전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8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에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7년 7월 20일 제262회 도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광정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0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9분)

● 부의장 광정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시겠으며, 본회의 산회 후에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8월 28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8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

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 부의장 곽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곽정수 부의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의 체육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창제

도를 마련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체육표창 대상 체육대회와 체육표창의 종류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으로써 표창을 수여할 때 부상으로 포상금, 연구비, 우승기, 우승컵, 상패, 훈련지원금,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고,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표창대상자 추천 방법으로는 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추천하고, 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해서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

등에관한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7년 3월 23일 개정·시행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 학원 단위 시설 기준 신설,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신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제한 신설, 그리고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은 평생교육기관 및 학원 등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인권보호 규정과 수강생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등의 가입금액 최저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최저한도는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학원 단위시설 기준 신설은 변화된 학생의 체격 향상 및 학원의 교육환경 개선

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 수용인원을 1㎡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조명 기준은 150룩스에서 300룩스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은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 학원의 종류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됨에 따라 신설된 특수교육분야 학원 외 21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설비·교구 기준입니다.

기존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면적은 변함이 없으며 보충학습은 종전의 60㎡ 이상에서 청주시 지역은 90㎡ 이상, 그 외 영세한 학원이 많은 기타 지역은 60㎡ 이상으로 정하고 음악교습과정 학원의 교구기준은 종전의 기준인 주요 실습용 악기 5대 이상에서 6대 이상으로 신설 강화하여 수강생들의 교육실습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은 수강생의 안전·보건·위생 및 난립방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 동 학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 제한 규정을 조례 개정안 제2조의5, 제2조의6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초·중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현행 23시를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입시 준비의 현실을 반영하여 24시까지로 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 조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곽정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11시 18분)

● 부의장 곽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곽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 “회계관계 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1항은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하여 조례 폐지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 부의장 걱정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21분)

● 부의장 걱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

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8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병우 위원님과 김부웅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웅,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산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최대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김용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별첨 4)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8월 29일 (수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다.

###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김주환 초등학교과장께서는 학습컨텐츠 활용 세미나 참석차, 김용환 총무과장께서는 전국 시·도교육청 총무과장 회의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

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11시 01분)

### ● 의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상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던 바, 먼저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

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학생 체육대회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 지도자,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과 부상을 충청북도 교육행정 기관 표창 조례에 의거 수여하였던 바, 동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체육표창에 대한 조례의 제정으로 각종 경기대회에 입상한 우수 선수 및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한 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과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의 지급시기와 격려행사의 시행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 중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를 “체육대회 출전 선수(팀)에게”로, 안 제5조 제3항 중 “체육대회에 출전하는”을 “체육대회 출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학원을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이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습시간 및 숙박시설 설치, 시설규모, 시설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제의 근거를 시도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첫 번째,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액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최저 한도액을 정하고, 학원 수강생들의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과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안내하는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수강생의 안전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분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학원 등에서의 수강생의 인권보호 규정 등을 덧붙으로써 학원운

영자 등에게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고취시키고 학부모 및 수강생의 교육적 편익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학생의 체격 향상에 따른 학습공간 확보, 학원의 급수시설,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 기준,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을 1㎡당 1.2인 이하에서 1㎡당 1인 이하로, 조명시설 기준을 책상 면을 기준으로 150룩스 이상에서 300룩스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학원의 교육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으로 수강생의 보건 위생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학원을 그 수강대상 및 교습과정의 성격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함에 따라 신설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규모를 정하였고, 또한 특수교육분야 외 21개의 신설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설비기준 및 교구기준을 정한 바, 이는 강의실 면적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학원수강생의 학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며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규모에 있어 충주시 및 제천시의 경우 학생수 감소 및 학원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기타지역의 시설면적을 적용하

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삭제하고 신설된 교습과정과 기존 교습과정 중 개정이 필요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교습과정 세분화 및 새로운 교습과정 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대하여 법의 제한적 취지에 따라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교습을 제한하였는바, 이는 공교육 정상화 및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들 학원의 난립방지 및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관리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설정하였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내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자체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함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엄

격한 등록요건을 통한 규제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 조례안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교습시간을 현재 23시에서 24시까지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고학년 학생의 현실적 수강 수요, 학원의 교습시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등학생에 한하여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인용 조항 및 오류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안 제2조의4 제4항의 “제2조의3 제1항 제5호”를 “제2조의3 제5호”로 안 제7조제1항의 “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조의5의”를 “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조의5의”로 별표1 학원의 시설 규모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숙학원 교습과정 시설규모의 “별표4와 같음”을 “별표3과 같음”으로 수정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산업기반기술 계열의 교습과정 중 “조선”, “교통”과 산업응용기술 계열의 교습과정 중 “포장”을 삭제하며, 별표2 제목에 관련 조항인 “(제2조의4 제3항 관련)” 삽입하고 별표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15. 환경 교습과정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의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 오염측정기 대 이상”을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 이상”으로,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를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 이상”으로, 19. 이미용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나. 설비 및 교구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종 이상”을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 1종 이상”으로, 별표3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5 제1항 관련)”을 “(제2조의5 제2항 관련)”으로, 별표4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관련)”을 “(제2조의3 제4호 관련)”으로, 별표5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3 제1항 제5호 관련)”을 “(제2조의3 제5호 관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시간을 현재 23시에서 24시까지로 완화는 것에 대하여는 과다한 학원의 심야교습으

로 인한 수면 및 휴식부족 등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 수업의 충실을 위해서 반대와 우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개정전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전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고, 또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성명용

이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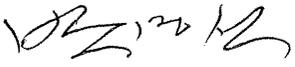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산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7. 9. .

부 의 장	곽 정 수	
위 원	김 병 우	
위 원	김 부 웅	
의사국장	박 경 석	

(별첨 1)

# 의 사 일 정 (안)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7. 8. 27. ~ 8. 29.(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8월 27일(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7. 8. 27. ~ 8. 29. (3일간) 2.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폐지조례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8월 28일(화)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8월 29일(수) 11:00	[ 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폐지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206 -1호
의결 연월일	2007년 8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8월 17일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6-1
----------	-------

제출연월일 : 2007. 8. 1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창제도를 마련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체육대회의 종류(안 제2조)

- (1) 충청북도학생체육대회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
- (2)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
- (3) 충청북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나. 체육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하고, 수여 대상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5조)

- (1)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에는 표창에 대한 부상을 할

- 수 있는 대상·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 (2) 표창을 수여할 때 부상으로 포상금, 연구비, 우승기, 우승컵, 상패, 훈련지원금,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고
- (3)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표창대상자 추천(안 제6조)

- (1) 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추천함.
- (2) 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함.

마.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해서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음(안 제7조)

##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입법예고(2007. 7. 13. ~ 8. 2.)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다. 자체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 및 학교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지도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청북도학생체육대회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대회
2.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와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
3. 국제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4.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제3조(표창권자) 표창 등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①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3.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지도한 자

②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2. 충청북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③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 및 지도자

2.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기단체

④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천한다.

②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 한다.

③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9조에 의거 추천한다.

제7조(공적심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10조에 의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의한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제8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표창대장 등) 표창장·상장·감사장 서식은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를 준용하고, 표창권자는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 관계법령 발췌

### □ 국민체육진흥법(전면개정 2007.4.11)

제14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7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③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4.27]

### □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9조(표창추천)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 추천은 본청의 각국·담당관 및 각 과장과(교육장 표창인 경우 교육청 각 과장 포함) 산하기관장 및 유관기관장(의뢰기관장 포함)이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 및 표창 추천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 교육청에는 “충청북도 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위원은 각국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총무과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2. 하급교육청에는 “충청북도 ○ ○ 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중 상위직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표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206-2호
의결 연월일	2007년 월 일 (제 206 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8 월 17일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6 - >
----------	---------

제출연월일 : 2007. 8. 1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7974호, 2006. 9. 22. 공포, 2007. 3. 23. 시행) 및 같은 법률 시행령(2007. 3. 23.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분리,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안 제2조)

- (1)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상 금액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최저 한도액을 정함
- (2) 학원 수강생들의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과 제때에 식사를 못하는 문제 해소를 위한 책무규정을 신설함

나. 학원 단위시설 기준 등 신설(안 제2조의3)

- (1)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을 1제곱미터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상향 조정함
- (2)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0.8인 이하로 하고, 좌석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함.
- (3)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다만, 실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음.
- (4)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을 정함
- (5)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신설(안 제2조의4)

- (1)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규모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정함  
(안 별표1, 별표2)

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안 제2조의5)

- (1)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주로 재수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고, 재학생까지 교습을 허용할 경우, 고액수강료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함
- (2)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 방지와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비 등의 등록 기준 설정(안 별표3)

- (3)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의 위치를 학원과 동일한 건물 또는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숙박시설에 생활지도담당인력 1인 이상(남, 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토록 하고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 함

마.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안 제2조의6)

- (1)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2)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바.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안 제4조)

- (1) 법제16조제2항에 의거 교습시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교습시간을 현재 23:00에서 24:00까지로 완화함.

##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자체 부패영향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7. 6. 8 ~ 6. 27

라. 규제심사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결과(2007. 8. 13.) 4개 안전에  
대해 원안 가결됨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들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2조의3(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4와 같다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

②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④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제2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⑤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

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

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영 제5조의2제1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②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 선 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3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교육감은  
제2조의5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  
록을 제한 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별표 3과 같이 한다.”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  
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중 중기운  
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중 피아노실  
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중 “(학원의 교습시간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00까지로 하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제7조제1항중 “학원의설립·운영자는 영 제12조”를 “영 제7조제2항, 영 제12조 및 제2조의5”로 하며,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를 각각“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로 한다.

제8조의 제목“(수강료 등)”을“(수강료 등 금액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5조”를 “영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설립·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2항중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보충학습 설립·등록 시설기준은 조례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2년간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2조의 개정 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동조에서 정한 배상기준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설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설립·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1

학원의 시설 규모(제2조의4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시지역 150㎡ 이상 기타지역 90㎡ 이상	
			기숙학원	별표4와 같음	
			검정고시	90㎡ 이상	
			보충학습	시지역 90㎡ 이상 기타지역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어학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2와 같음	
	독서실	독서실		시지역 120㎡ 이상 기타지역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별표2와 같음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60㎡ 이상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술	기계, 자동차, 금속, 항공, 통신, 화공, 세라믹, 조선, 전기, 토목, 자회, 전자, 의복, 섬유, 광업, 건축,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별표2와 같음		
		산업응용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텔레마케팅	"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60m <sup>2</sup> 이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별표2와 같음		
			병원코디네이터 (coordinator)	60m <sup>2</sup> 이상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별표2와 같음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		
		간호보조술	간호조무사	"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클씨, 부기, 속셈, 속독	60m <sup>2</sup> 이상		
			주산	별표2와 같음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90m <sup>2</sup>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m <sup>2</sup> 이상	
				성인고시	90m <sup>2</sup> 이상	
		기예기예	기예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별표2와 같음	
웅변, 화술	60m <sup>2</sup> 이상					
독서실		독서실	시지역 120m <sup>2</sup> 이상 기타지역 60m <sup>2</sup> 이상			

※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중 보충학습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통교과를 보완 교습하는 교습과정을 말하며,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기준 면적중 충주시, 제천시 지역은 기타지역 시설규모를 적용함.

별표 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예 능	예 능	1. 음 악	가. 시 설 (1) 음악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1대 이상 (2) 악기과정 (가) 필요한 악기 6대 이상	
			2. 미 술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3) 서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석고 및 석고 대 10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모포 등 필요한 시설·설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무 용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2) 탈의실 :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각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특수교육	가. 시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교구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 행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 치료교육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기 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1. 기 계	가. 시 설 (1) 설계실 : 60㎡ 이상 (2) 실습공장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반 2대 이상 (2) 모우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1,자동차정비)	가. 시 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정비실습실 : 60㎡ 이상 (3)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작업대 10대 이상 (2) 디젤기관 2대 이상 (3) 가솔린기관 5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2,중기운전)	가. 시 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운전실습장 : 990㎡ 이상 (3) 기재실 : 16.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밧데리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 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기계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3. 금 속 (귀금속 가공)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 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2) 기재실 : 15㎡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전 기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2) 전기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터 1마력 이상의 것 2대 이상 (2) 수전, 송전배전실 (3) 테스타 10대 이상 (4) 트랜스(변압기) 5대 이상 (5) 실험대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 신 (6-1. 유·무 선통신)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파일통합장치 1대 이상 (2) 하드디스크 2GB이상 컴퓨터 1대이상 (3) 터미널용 컴퓨터 10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4)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10개 이상 (5) 업무용 통신 프로그램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 신 (6-2 유·무 선설비)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뎀(MODEM) 1대 이상 (2)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4) 주파수 발전기 1대 이상 (5) 회로시험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전 자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2) 기재실 : 15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재 (가)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3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체커 1대 이상 (라) 저주파발전기 2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 1대 이상 (바) 시그올레트시 1대 이상 (사) 정전용량계 1대 이상 (아) 임피던스브릿쉬 1대 이상 (자)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30조 이상 (2) 텔레비전과정 (가) “ (1) ”호의 공통기재 (나) 텔레비전, 스위프발전기 1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다)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라) 고전압계 1대 이상 (3) 컴퓨터기기과정 (가) “ (1) ”, “ (2)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컴퓨터(전산기기) 5대 이상 (다) 컴퓨터용 모니터 1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비디오과정 (가) “ (1)”, “ (2) ”호의 설비 및 교구 (나) VTR 2대 이상 (다) 비디오카메라 2대 이상 (라) 모니터텔레비전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항 공 (항공정비)	가. 시 설 (1) 강의실 : 30m <sup>2</sup> 이상 (2) 정비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3) 기재실 : 3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 공 기 (가) 고정익 1대 이상 (나) 회전익 1대 이상 (2) 엔 진 (가) 수평대향형 1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제트엔진 (가) Turbo Jet 1대 이상 (나) Turbo Prop 1대 이상 (다) Turbo Shaft 1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5)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토목,건축	가. 시 설 (1) 설계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의복·섬유 (10-1,양재· 한복)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2)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3) 전기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4) 재단대 4인당 1대 이상 (5) 전신마네킹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의복·섬유 (10-2,수예· 자수)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이상 (2) 수예, 순자수, 인형, 조화과정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광 업 자 원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2) 화약 및 발파작업 구(진동측정기, 발파기, 누설 전류측정기 등)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농 림 (동 물)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 300m <sup>2</sup> 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어류, 조류, 갑각류) 5점 이상 (나) 박제 제작기구 1인당 1조이상 (3) 모피피혁과정 (가) 화공약품 처리장 15m <sup>2</sup>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 해 양	가. 시설 (1) 강의실 : 30m <sup>2</sup> 이상 (2)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① 정박계선기구(양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②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③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④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중별 각 1개 이상 ⑤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①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②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③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④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에너지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환 경 (냉동, 열관리, 냉·난방)	가. 시 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실습실 : 60㎡ 이상 (3)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대 이상 (2) 소음진동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4) 보일러 4종 이상(부속장치 포함) (5) 버너 4개 이상 (6) 개스분석기 1개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7)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안전기기 등 5종 이상  (8) 냉동 유니트 1종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  (10) 진공펌프, 회전식 압축기 각1대 이상  (11) 밀폐형압축기 2대 이상  (12) 증발기, 응축기 2대 이상  (13)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공 예 (16-1,공예· 도예)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공 예 (16-2,보석 감정)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보석감정과정  (가) 현미경 10~40배 1인당 1대  (나) 굴절계 1인당 1대  (다) 정밀저울 3인당 1대  (라) 전자저울 3인당 1대  (마) 분광기 2인당 1대  (바) 자외선기 2대 이상  (사) 이색경 2대 이상  (아) 각종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안전관리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기 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응 용기술	18. 디자인 (18-1,패션 디자인)	가. 시 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축소·확대복사기 1대 이상 (3) VTR 1대 이상 (4) 에어브로쉬 1Set 이상 (5) 모타 미싱 10대 이상 (6) 패턴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7) 스팀아이롱 5대 이상 (8) 인대 5대 이상 (9) 컴퓨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디자인 (18-2,산업 디자인)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터 1대 이상 (다) 실습용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3) 컴퓨터디자인과정 (가) 컴퓨터 일시수용인원 1인당대 이상 (나) 스캐너 1대 이상 (다) 칼라프린터 1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용 용기술		(라) 플로터 1대 이상 (마) VTR 1대 이상 (바) TV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이·미용 (19-1,미용)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실습대(4인용 이상) 5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마네킹(고정대 포함), 미용 의자, 화장대 각 10조 이상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종 이상 (4) 대형거울 2개 이상 (5)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이·미용 (19-2,이용)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이상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바리칸, 면도, 가위 각 10대이상 (5) 대형거울 : 이발의자수와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식 음 료 품 (20-1,조리)	가. 시 설 (1) 조리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250ℓ 이상) 2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응 용기술		(3) 환풍기 2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10인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 이상 (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6)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식음료품 (20-2,제과 제빵)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시청각교구 세트(TV, VTR, 슬라이드) (2) 수직형믹스 중형 2대 이상 (3) 오븐(LPG 또는 전기)2장 용량1대 이상 (4) 수평반죽기 중형 2대이상 (5) 발효실(LPG 또는 전기) 40장 용량 1대 이상 (6) 추저울(5kg) 6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계,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8) 습도계, 온도계 각 4대이상 (9) 로라(Dough Sheeter)1대 이상 (10)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11) 앙금믹서(중형) 1대 이상 (12) 썬크대 : 실습실별로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식음료품 (20-3,조주)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응 용기술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 양주병(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인 쇄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및 기타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사 진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2) 암실 :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피아노 조율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4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4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4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산 업 서비스	24. 속 기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 업 서비스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인 1대 (2) 속기용 키보드 1인 1대 (3) 프로그램 10종 이상 (4) 고속입력기 1인 1대 (5) 프린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5. 전 산 회 계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인 1대 (2) 프로그램 1인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전 자 상거래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서버용 컴퓨터 1대 이상 (2) 컴퓨터 1인 1대 (3) 프로그램 1인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텔 레 마케팅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MFC전화기 1인 1대 (2) 유무선 헤드폰 1인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일 반 서비스	28. 애 견 미 용	가. 시 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미용테이블(일시수용인원)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일 반 서비스		(2) 목욕시설 1조 이상 (3) 미용도구 (가) 클리퍼 (나) 가 위 (다) 브러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장 의	가. 시 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연습대 10대 이상 (2) 수의(남,여 구분)10세트 이상 (3) 관 2대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호 스피스	가. 시 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침 대 2조 이상 (2) 휠체어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1. 항 공 승무원	가. 시 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여객기객실 Mock-up(좌석 20조) 1set 이상 (2) 항공용 구명동의 20조 이상 (3) 항공용 산소마스트 20조 이상 (4) Catering Cart 4조 이상 (5) 여객기용 alley(주방시스템) 1조 이상 (6) 여객기용 Lavatory(화장실) 1조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컴퓨터	32. 컴퓨터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PentiumⅣ이상) 1인당 1대 (2) 프린터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3. 게 임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인 1대 (2) 프로그램 6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4. 로 봇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실습용 탁자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5. 정 보 처 리	가. 시 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PentiumⅢ이상) 20대 이상 (2) 교육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3) 컴퓨터 회로기판 및 각종 IC류 10대 이상 (4) 입력작성을 위한 기기 1대 이상 (5) 출력을 위한 프린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컴퓨터	36. 통신기기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컴퓨터 2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4) 표준발전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인터넷, 소프트웨어	가. 시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PentiumIV이상) 20대 이상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2)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2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문화 관광	38. 출 판	가. 시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9. 영 상, 음 반	가. 시 설 (1) 강의실 : 30m <sup>2</sup> 이상 (2)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3) 녹음실 및 기재실 2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메타 VTR 5대 이상 (4) VTR 카메라 10종 이상 (5) 8mm 릴테이프 등 5종 이상 (6) TV 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 습과 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기 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문화 관광		(8) 간이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Set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0. 영 화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영화기술과정 (가) 현상실 : 10㎡이상 (나) 녹음실 : 15㎡이상 (다)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2)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무대장치, 조 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방 송	가. 공통 시설 (1) 강의실 : 30㎡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조정기(VIDEO MIXERUN IT) 1대 ②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③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 RATOR) 1대 ④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⑤ 방송용녹음기(TAPE RECOR DER) 1대 이상 ⑥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문화 관광		⑦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⑧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⑨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3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베타캠 고화질 카메라(BETACAM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 (S.VHS CAMERA) 2대 이상 ②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③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편집실 ① 기재실: 30m <sup>2</sup> 이상 ② 설비 및 교구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CONSOL) 1대 ㉢ 방송용 녹화기(S.VHS 또는 BETACAM) 1:1 2대 이상 ㉣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PROCESSOR) 1대 이상 ㉤ 방송용 색상보정기 (COLORCORRECTOR) 1대 이상 ㉥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나) 녹음실 ① 기재실: 30m <sup>2</sup>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문화 관광		㉑ 녹음조정실: 30㎡이상 ㉒ 녹음 스튜디오: 30㎡이상 ② 설비 및 교구 ㉓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㉔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㉕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㉖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㉗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㉘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㉙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㉚ 영상음반기(COMPUTER DISK ELECTRICGRAPHIC) 1대 ㉛ MULTI TRACK RECORDER 1대 ㉜ CASSETTE DECK 1대 ㉝ COMPACT DISK 1대 ㉞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TABLE) 1대 (다) 야외녹화장비 ①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CAMERA) 3대 이상 ②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③ 방송용 건전기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문화 관광		<p>(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함</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2) 방송제작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3) 방송기술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4) 아나운싱·리포터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중 (3)의 (가)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p> <p>(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p> <p>(나) 실습실 90㎡ 이상</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6) 편집과정</p> <p>(가) “가”목의 공통시설</p> <p>(나) “나”목(1) 및 (3)의 (가)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문화 관광		(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① “가”목의 공통 시설 ② 기재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3대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3대 이상 ②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문화 관광		각3대 이상 ③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1대 ④ 복호기(DECORDER) 1대이상 ⑤ 영상분배기(VIDEO DIVIDERAMP) 1대 ⑥ 음향분배기(AUDIOO DIVIDERAMP) 1대 ⑦ 칼라화면발생기(PATTERNGENE RATOR) 1대 ⑧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⑨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⑩ 채널혼합기 1대 ⑪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⑫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⑬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⑭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2. 관 광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반당 각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3. 캐릭터	가. 시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간호 보조 기술	44. 간 호 조무사	가. 시 설 (1) 강의실 : 30m <sup>2</sup> 이상 (2)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침대 대인용 2개 이상, 소인용 1개 이상 (2) 인체모형 1개 이상 (3) 인체해부 및 생리패도 각 1부 이상 (4)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5)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6) 주사기 10종 40개 이상 (7)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8) 혈압계, 청진기 각 20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종 이상 (12) 인공배뇨셀 1종 이상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1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경영 사무 관리	45. 주 산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 예	46. 국 악	가. 시 설 (1) 실습실 : 60m <sup>2</sup>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2) 주요실습용 악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기 예	47. 서 예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틀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꽃기예, 꽃꽂이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패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9. 만 화	가. 시 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라이트 박스 1인당 1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0. 연 극, 모 델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모델, 연극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1. 마 술, (매 직)	가. 시 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거울 (2) 오디오(20W 이상)1대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기 예		(3) 마술도구 5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실 용 음 악	가. 시 설 (1) 실습실 :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오디오(100W 이상) 1대이상 (2) 미디프로세서(반주기) 1대 이상 (3) 필요한 악기 5대 이상	
			53. 성 악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이상) (2) 피아노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 현대무용 , 전통무용	가. 시 설 (1) 무용실 : 60㎡ 이상 (2) 탈의실 :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 바 둑	가. 시 설 (1)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학교교과 교습학원 · 평생작업 교육학원	독서실	독서실	56. 독서실	가. 시 설 (1) 열람실 : 시지역 : 120㎡ 이상 기타지역 : 60㎡ 이상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비 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 평생작업 교육학원	독서실	독서실		<p>나. 설 비</p> <p>(1)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이상, 세로58cm이상)</p> <p>(2) 남·여 공용인 독서실은 열람실을 남·여 별로 구분하여야 한다.</p> <p>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별표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  
(제2조의5 제1항 관련)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강의실 등	가. 강의실 : 210㎡이상 나. 보건실 : 33㎡이상 다. 휴게실 : 66㎡이상(남, 여 별로 구분 가능) 마. 체육시설(혹은 체육장) : 100㎡이상(단 외부 체육장은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기숙사	가. 시설 1) 기숙사 면적(내측간의 면적) : 수용예정인원×4㎡ 이상 [단,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이상]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수용예정인원 X0.4㎡ 이상(남, 여 구분) 3) 세탁실 1실(남, 여 구분) 나. 설비 1) 세탁기(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2)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3) 급수시설(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급식시설	가. 조리실 1) 면적 <table border="1" data-bbox="422 865 1103 1166"> <thead> <tr> <th>급식학생수</th> <th>면적</th> </tr> </thead> <tbody> <tr><td>50인 이하</td><td>14㎡</td></tr> <tr><td>51인~100인</td><td>14㎡+0.14㎡×(급식학생수-50)</td></tr> <tr><td>101인~150인</td><td>21㎡+0.14㎡×(급식학생수-100)</td></tr> <tr><td>151인~200인</td><td>28㎡+0.14㎡×(급식학생수-150)</td></tr> <tr><td>201인~250인</td><td>35㎡+0.14㎡×(급식학생수-200)</td></tr> <tr><td>251인~300인</td><td>42㎡+0.14㎡×(급식학생수-250)</td></tr> <tr><td>301인~600인</td><td>49㎡+0.05㎡×(급식학생수-300)</td></tr> <tr><td>601인~900인</td><td>64㎡+0.04㎡×(급식학생수-600)</td></tr> <tr><td>901인~1,200인</td><td>76㎡+0.04㎡×(급식학생수-900)</td></tr> <tr><td>1,201인~1,500인</td><td>88㎡+0.04㎡×(급식학생수-1,200)</td></tr> <tr><td>1,501인이상</td><td>100㎡+0.02㎡×(급식학생수-1,500)</td></tr> </tbody> </table> 2) 시설·설비 기준 <table border="1" data-bbox="428 1182 1108 1707"> <thead> <tr> <th>구 분</th> <th>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1. 배수설비</td> <td>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td> </tr> <tr> <td>2. 가열설비</td> <td>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td> </tr> <tr> <td>3. 환기·조명설비</td> <td>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td> </tr> <tr> <td>4. 세척설비</td> <td>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td> </tr> <tr> <td>5. 방충·방서 등 설비</td> <td>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td> </tr> <tr> <td>6. 기타 시설·설비</td> <td>배선대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td> </tr> </tbody> </table>		급식학생수	면적	50인 이하	14㎡	51인~100인	14㎡+0.14㎡×(급식학생수-50)	101인~150인	21㎡+0.14㎡×(급식학생수-100)	151인~200인	28㎡+0.14㎡×(급식학생수-150)	201인~250인	35㎡+0.14㎡×(급식학생수-200)	251인~300인	42㎡+0.14㎡×(급식학생수-250)	301인~600인	49㎡+0.05㎡×(급식학생수-300)	601인~900인	64㎡+0.04㎡×(급식학생수-600)	901인~1,200인	76㎡+0.04㎡×(급식학생수-900)	1,201인~1,500인	88㎡+0.04㎡×(급식학생수-1,200)	1,501인이상	100㎡+0.02㎡×(급식학생수-1,500)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기타 시설·설비	배선대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식학생수	면적																																							
50인 이하	14㎡																																							
51인~100인	14㎡+0.14㎡×(급식학생수-50)																																							
101인~150인	21㎡+0.14㎡×(급식학생수-100)																																							
151인~200인	28㎡+0.14㎡×(급식학생수-150)																																							
201인~250인	35㎡+0.14㎡×(급식학생수-200)																																							
251인~300인	42㎡+0.14㎡×(급식학생수-250)																																							
301인~600인	49㎡+0.05㎡×(급식학생수-300)																																							
601인~900인	64㎡+0.04㎡×(급식학생수-600)																																							
901인~1,200인	76㎡+0.04㎡×(급식학생수-900)																																							
1,201인~1,500인	88㎡+0.04㎡×(급식학생수-1,200)																																							
1,501인이상	100㎡+0.02㎡×(급식학생수-1,500)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기타 시설·설비	배선대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급식시설	3) 기구기준	
	품목	비고
	1. 개수대	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조리작업대	높이 80cm 내지 90cm로서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냉장고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4. 식기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5. 조리용구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6. 제반기 또는 밥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7. 국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8. 조리용구	적정수량의 조리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춘다.
	9. 저울	권장사항(100kg·10kg 및 1kg용 각 1대)
	10. 계량컵	권장사항(1개이상)
	11. 조리실용 시계·조리용온도계 및 온·습도계	권장사항(각 1개)
	12. 조리종사자용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마스크	권장사항(조리종사자별로 각 한벌)
	13. 식품절단기	권장사항
	14. 식품박피기	권장사항
	15.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권장사항
	16. 자동세척기	권장사항
	17. 식품운반용 수레	권장사항
	18. 세미기	권장사항
	19. 식기소독기	권장사항
	20. 배식대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1. 식판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2.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기구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나. 식품보관실	1) 시설·설비 기준	
	품목	비고
	1. 식료품보관용 선반 및 깔개	
	2. 환기설비	환풍기등을 설치한다
	3. 방습시설	
	4. 방충·방서설비	
	5. 배수설비	
	6. 조명설비	식품식별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온·습도계	
다. 식당	1) 면적 : (수용예정인원 x 1/2 x 1㎡)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 이상	
	2) 식탁 및 의자 : 수용예정인원 1/2이 일시 사용 가능한 수량	
	3) 급수시설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라.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 별표 4

###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2조의3 제1항 제4호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구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할 것
4.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6.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별표5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2조의3 제1항 제5호 관련)

---

#### 1. 환기

- 가.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 2. 채광(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인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교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조도(인공조명)

-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학원의설립·운영 및과의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u> -----</p>
<p>제2조(시설기준)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p> <p>②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지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습과정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다.</p>	<p>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p> <p>①법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li> <li>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li> </ol> <p>②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③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④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영 제9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⑤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

#### <신 설>

③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차별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조의2(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제3조의2제1항 별표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신 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 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2조의3(단위시설의 기준)법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신 설>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일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5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 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의4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설>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

②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 과정에 대하여는 교육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2의 기준으로 본다.

④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제2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⑤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

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②영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생활지도담당 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

<신 설>

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 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  
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  
한 방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은 별표3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  
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  
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  
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  
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  
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  
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  
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  
양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

<신 설>

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  
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

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①충청  
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5 규정에 불구  
하고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  
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  
록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  
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경우에는 숙박시  
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등록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  
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 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학원의 시설면적 증가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의 설비 및 교구중에서 증원되는 인원의 교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및 교구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학원의 교습시간) ①재학생

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① -----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 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 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한다.

<삭 제>

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법제16조 제2항의 규정

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 ①학원의설립·운영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통보된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해임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등) ①학원의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전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00까지로 하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①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조의5의-----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②-----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제8조(수강료등금액통보)-----영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관계법령 발췌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②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8조 (시설기준) ①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③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줄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별첨 4)

의안번호	제 206 <sub>-3</sub>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8월 일 (제 206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  
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8월17일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6-3
----------	-------

제출연월일 : 2007. 8. 1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폐지이유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으로 조례  
설치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조례 제188호, 1964. 5. 18)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재정법[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9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 2007.4.5 대통령령 제19995호]

제13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규칙) 이 영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별첨 5)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7. 8.29. 11:00)

## 조례 심사 보고서

1.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8월 27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8월 27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8월 28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박의상)

### 가. 제안이유

-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창 제도를 마련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체육대회의 종류(안 제2조)
  - 충청북도학생체육대회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
  -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

- 충청북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 체육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하고, 수여대상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5조)
  -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에는 표창에 대한 부상을 할 수 있는 대상·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 표창을 수여할 때 부상으로 포상금, 연구비, 우승기, 우승컵, 상패, 훈련지원금,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고,
  -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표창대상자 추천(안 제6조)
  - 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추천함.
  - 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함.
-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해서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음(안 제7조)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학생체육대회, 전국학생체육대회, 국제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 지도자,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과 부상(포상금, 훈련지원금, 장학금 등)을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에 의거 수여하였던 바,
- 동 조례에 대상·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체육표창에 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입상한 우수 선수 및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다만,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의 지급시기와 격려 행사의 시행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에 대하여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를 “체육대회 출전 선수(팀)에게”로, 안 제5조 제3항에 대하여 “체육대회에 출전하는”을 “체육대회 출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 5. 수정안 주요 내용

##### 가. 수정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의 지급시기와 격려 행사의 시행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수정 주요 골자

- 안 제5조 제2항 중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를 “체육대회 출전 선수(팀)에게”로 수정
- 안 제5조 제3항 중 “체육대회에 출전하는”을 “체육대회 출전”으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8월 27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8월 27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8월 28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박의상)

### 가. 제안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7974호, 2006. 9. 22. 공포, 2007. 3. 23. 시행) 및 같은 법률 시행령 (2007. 3. 23.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원교육학원 분리,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안 제2조)

-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상금액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최저 한도액을 정함.
- 학원 수강생들의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과 제때에 식사를 못하는 문제 해소를 위한 책무규정을 신설함.

○ 학원 단위시설 기준 등 신설(안 제2조의3)

-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을 1제곱미터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상향 조정함.
-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0.8인 이하로 하고, 좌석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함.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다만, 실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음.
-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을 정함.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 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신설(안 제2조의4)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규모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정함.(안 별표1, 별표2)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안 제2조의5)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주로 재수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고, 재학생까지 교습을 허용할 경우, 고액수강료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함.
  -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 방지와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비 등의 등록기준 설정(안 별표3)
  -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의 위치를 학원과 동일한 건물 또는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숙박시설에 생활지도담당인력 1인 이상(남, 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토록 하고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 함.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안 제2조의6)
-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안 제4조)
-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교습시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교습시간을 현재 23:00에서 24:00까지로 완화함.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7974호, 2006. 9. 22.) 및 같은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3호, 2007. 3. 23.)에 그동안 학원에 대한 규제가 학원의 성격 및 종류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주로 초·중·고등학생 및 그에 상응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산업기술 또는 금융·경영계통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들까지 지나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자를 구분하고, 이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습시간 및 숙박시설 설치, 시설규모,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제의 근거를 시·도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 1.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2조)

- 학원 또는 교습소 수강생은 대부분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여 수강생의 안전과 신속한 사고수습에 어려움이 있었고,
- 일부 학원 등에서 수강생에 대한 체벌,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식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 안 제2조에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액을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최저 한도액을 정하고, 학원 수강생들의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과 적절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안배 하는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함.

- 많은 사람이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경우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고발생시 학원 또는 교습소는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험 등의 가입 최저 한도 금액을 설정함으로써 수강생의 안전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분쟁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아울러, 학원 등에서의 수강생의 인권보호 규정 등을 됴으로써 학원 운영자 등에게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고취시키고, 학부모 및 수강생의 교육적 편익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2. 학원 단위시설 기준 등 신설(안 제2조의 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의거 종전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되었던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을 사·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 안 제2조의 3을 신설하여 학생의 체격 향상에 따른 학습공간 확보, 학원의 급수시설,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환기·채광·조명·온습도 기준,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을 1㎡당 1.2인 이하에서 1㎡당 1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조명시설 기준을 책상면을 기준으로 150룩스 이상에서 300룩스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 학원의 교육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으로 수강생의 보건 위생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신설(안 제2조의 4)

- 성인교육 또는 직업교육 차원의 민간 교육서비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학원을 그 수강대상 및 교습과정의 성격에 따라 “학 교교과교습학원” 과 “평생직업교육학원” 으로 구분함에 따라 신설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규모를 정한 것이며(안 별표 1)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신설된 교 습과정(특수교육분야 외 21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설비기준 및 교 구기준(안 별표2)을 정한 것임
-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 규모(안 별표1)를 보면
  - 현행 조례는 입시교습과정이 종합과 단과로 구분되어 강의실 면적이 입시종합의 경우 시지역은 210㎡이상, 기타지역은 150㎡이상, 입시단 과의 경우 시지역은 90㎡이상, 기타지역은 60㎡이상으로 규정된 바, 개정 조례안은 입시단과와 종합이 입시교습과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입시학원의 시설기준 면적 상향시 건물 임대료, 관리비 등이 수강료 로 전가되어 수강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시지역은 150㎡ 이상, 기타지역은 90㎡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정 시설규모의 기준 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시설규모를 현행 60㎡이상에서 개정 조례안은 시지역은 90㎡이상, 기타지역은 60㎡이상으로 하고 충주시와 제천시의 경우 기타지역의 시설면적을 적용토록 한 바, 이는 강의실 면적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학원수강생의 학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며, 충주시 및 제천시의 경우 학생수 감소 및 학원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면 기타지역의 시설면적을 적용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안 별표2)를 보면
-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신설된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 교습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도 학원 등록할 수 있도록 개별실 6.6㎡ 이상, 집단실 20㎡ 이상의 시설규모와 치료 교육과정별 교구 기준을 정하였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기존 학원의 교습과정 중 경영실무분야에 포함되었던 “속기” 교습과정 학원이 직업기술분야 학원으로 재분류됨으로써 “속기” 교습과정 학원에 대한 시설규모를 변경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삭제하고, 신설된 교습과정과 기존 교습과정 중 개정이 필요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정한 것으로,
- 이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교습과정 세분화 및 새로운 교습과정 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제한

(안 제2조의 5, 안 제2조의 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설비기준, 재학생 제한에 관한 사항,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의 등록기준이 시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 법의 제한적 취지에 따라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교습을 제한하였는 바, 이는 공교육 정상화 및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의 5)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난립방지 및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관리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설정함(안 제2조의 5)
- 숙박시설의 위치를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도록 함
- 숙박시설에는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함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숙사, 급식시설, 강의실 등의 시설·설비기준을 정함(안 별표 3)
-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함
- 숙박시설에 생활지도 담당인력 1인 이상(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 배치를 의무화함
-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은 관할 지역내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자체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집단생활에 따른 사고위험 등에 대한 우려, 수강생의 안전·보건·위생 관리 강화, 무분별한 난립 방지 등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함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엄격한 등록요건을 통한 규제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제한적인 허용을 통하여 규제를 강화하되,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를 적정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5.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안 제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 조례안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교습시간을 현재 23:00에서 24:00까지로 완화함
- 이는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고학년 학생의 현실적 수강 수요, 학원의 교습시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등학생에 한하여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인용 조항 중 오류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 안 제2조의4 제4항의 “제2조의3제1항제5호“를 “제2조의3제5호“로 수정,
  - 안 제7조제1항의 “영 제7조제2항, 영 제12조 및 제2조의5의“를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조의5의“로 수정,
  - 별표 1 학원의 시설 규모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숙학원“ 교습과정 시설규모의 “별표 4와 같음“을 “별표 3과 같음“으로 수정, “평생직업교육학원“ “산업기반기술“ 계열의 교습과정 중 “조선, 교통“과 “산업응용기술“ 계열의 교습과정 중 “포장“을 삭제,
  - 별표 2 제목에 관련 조항인 “(제2조의4 제3항 관련)“ 삽입,
  -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15. 환경“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대 이상“을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이상“으로,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를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이상“으로, “19. 이·미용“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나. 설비 및 교구“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종 이상“을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 1종 이상“으로 수정,
  - 별표 3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5 제1항 관련)“을 “(제2조의5 제2항 관련)“으로 수정,
  - 별표 4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관련)“을 “(제2조의3 제4호 관련)“으로 수정,

- 별표 5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3 제1항 제5호 관련)”을 “(제2조의3 제5호 관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 5. 수정안 주요 내용

### 가. 수정이유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인용 조항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수정 주요 골자

- 안 제2조의4 제4항의 “제2조의3제1항제5호”를 “제2조의3제5호”로 수정
- 안 제7조제1항의 “영 제7조제2항, 영 제12조”를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제12조”로 수정
- 별표 1 학원의 시설 규모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숙학원” 교습과정 시설규모의 “별표 4와 같음”을 “별표 3과 같음”으로 수정, “평생직업교육학원” “산업기반기술” 계열의 교습과정 중 “조선, 교통”과 “산업응용기술” 계열의 교습과정 중 “포장” 삭제
- 별표 2 제목에 관련 조항인 “(제2조의4 제3항 관련)” 삽입
-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15. 환경”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대 이상”을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이상”으로,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

축기 각 2대“를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이상“으로, “19. 이.미용“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나. 설비 및 교구“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종 이상“을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 1종 이상“으로 수정

- 별표 3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5 제1항 관련)“을 “(제2조의5 제2항 관련)“으로 수정
- 별표 4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관련)“을 “(제2조의3 제4호 관련)“으로 수정
- 별표 5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3 제1항 제5호 관련)“을 “(제2조의3 제5호 관련)“으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시간을 현재 23:00에서 24:00까지로 완화는 것에 대하여 과도한 학원의 심야교습으로 인한 수면 및 휴식부족 등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 수업의 충실을 위해서 반대와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8월 27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8월 27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8월 28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으로 조례 설치의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고,
- 또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 2007. 4. 5. 대통령령 제19995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 8. 29.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례안중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에 대하여 부상 및 격려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를 "체육대회 출전 선수(팀)에게"로 수정하고, 제5조제3항의 "체육대회에 출전하는"을 "체육대회 출전"으로 수정한다.

## 3.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② <u>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u>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② <u>체육대회 출전 선수(팀)에게</u> ----- ----- -----
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u>체육대회에 출전하는</u>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u>체육대회 출전</u> ----- ----- -----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 8. 29.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중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인용조항중 오류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사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개정안 제2조의4제4항의 "제2조의3제1항제5호"를 "제2조의3제5호"로 수정하고,
- 개정안 제7조제1항의 "영 제7조제2항, 영 제12조 및 제2조의5"를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조의5"로 수정하며,
- 별표 1 학원의 시설 규모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숙학원" 교습과정 시설규모의 "별표 4와 같음"을 "별표 3과 같음"으로 수정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산업기반기술" 계열의 교습과정 중 "조선, 교통"과 "산업응용기술" 계열의 교습과정 중 "포장"을 삭제하며,
- 별표 2 제목에 관련 조항인 "(제2조의4제3항 관련)"을 삽입하고,
-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15. 환경"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

구기준의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대 이상"을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이상"으로,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를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 이상"으로 하고,

"19. 이·미용"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나. 설비 및 교구"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종 이상"을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 1종 이상"으로 수정하며,

- 별표 3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5제1항 관련)"을 "(제2조의5제2항 관련)"으로 수정하고,
- 별표 4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3제1항제4호 관련)"을 "(제2조의3제4호 관련)"으로 수정하며,
- 별표 5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3제1항제5호 관련)"을 "(제2조의3제5호 관련)"으로 수정한다.

### 3.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2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④ 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④ ----- ----- ----- 제2조의3 제5호 ----- ----- -----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 ①영 제7조제2항, 영 제12조 및 제2조의5-----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 ----- -----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 제2항, 제12조 및 제2조의5 --- ----- -----																		
별표 1 학원의 시설 규모(제2조의4 제1항 관련)	별표 1 학원의 시설 규모(제2조의4 제1항 관련)	별표 1 학원의 시설 규모(제2조의4 제1항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교습과정</th> <th style="width: 33%;">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th> <th style="width: 33%;">비고</th> </tr> </thead> <tbody> <tr> <td>&lt;신설&gt;</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고	<신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교습과정</th> <th style="width: 33%;">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th> <th style="width: 33%;">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숙학원</td> <td>별표4와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고	기숙학원	별표4와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교습과정</th> <th style="width: 33%;">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th> <th style="width: 33%;">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숙학원</td> <td>별표3과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고	기숙학원	별표3과 같음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고																		
<신설>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고																		
기숙학원	별표4와 같음																			
교습과정	시설규모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비고																		
기숙학원	별표3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계열</th> <th style="width: 66%;">교습과정</th> </tr> </thead> <tbody> <tr> <td>&lt;신설&gt;</td> <td></td> </tr> <tr> <td>&lt;신설&gt;</td> <td></td> </tr> </tbody> </table>	계열	교습과정	<신설>		<신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계열</th> <th style="width: 66%;">교습과정</th> </tr> </thead> <tbody> <tr> <td>산업기반기술</td> <td>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td> </tr> <tr> <td>산업응용기술</td> <td>디자인, 이·미용, 식품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td> </tr> </tbody> </table>	계열	교습과정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품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계열</th> <th style="width: 66%;">교습과정</th> </tr> </thead> <tbody> <tr> <td>산업기반기술</td> <td>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삭제,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삭제, 안전관리</td> </tr> <tr> <td>산업응용기술</td> <td>디자인, 이·미용, 식품료품, 삭제,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td> </tr> </tbody> </table>	계열	교습과정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삭제,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삭제,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품료품, 삭제,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계열	교습과정																			
<신설>																				
<신설>																				
계열	교습과정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품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계열	교습과정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삭제,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삭제,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품료품, 삭제,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별표 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별표 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별표 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4제3항 관련)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2		별표 2		별표 2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10. 환경 (냉동, 열관리, 냉·난방)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 측정기 각 1대 이상 (9) 분해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각 2대 이상	15. 환경 (냉동, 열관리, 냉·난방)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 측정기 <u>대 이상</u> (9) 분해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u>각 2대</u>	15. 환경 (냉동, 열관리, 냉·난방)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 측정기 <u>각 1대 이상</u> (9) 분해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u>각 2대 이상</u>
14. 이·미용 (19-1, 미용)	나. 설비 및 교구 (3) 안전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u>각 1종 이상</u>	19. 이·미용 (19-1, 미용)	나. 설비 및 교구 (3) 안전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u>각종 이상</u>	19. 이·미용 (19-1, 미용)	나. 설비 및 교구 (3) 안전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u>각 1종 이상</u>
<신 설>		별표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 (제2조의5제1항 관련)	별표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 (제2조의5제2항 관련)	<신 설>	
<신 설>		별표 4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의3제1항제4호 관련)	별표 4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의3제4호 관련)	<신 설>	
<신 설>		별표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조의3제1항제5호 관련)	별표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조의3제5호 관련)	<신 설>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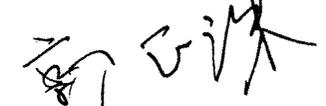
2007. 8. 29.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간사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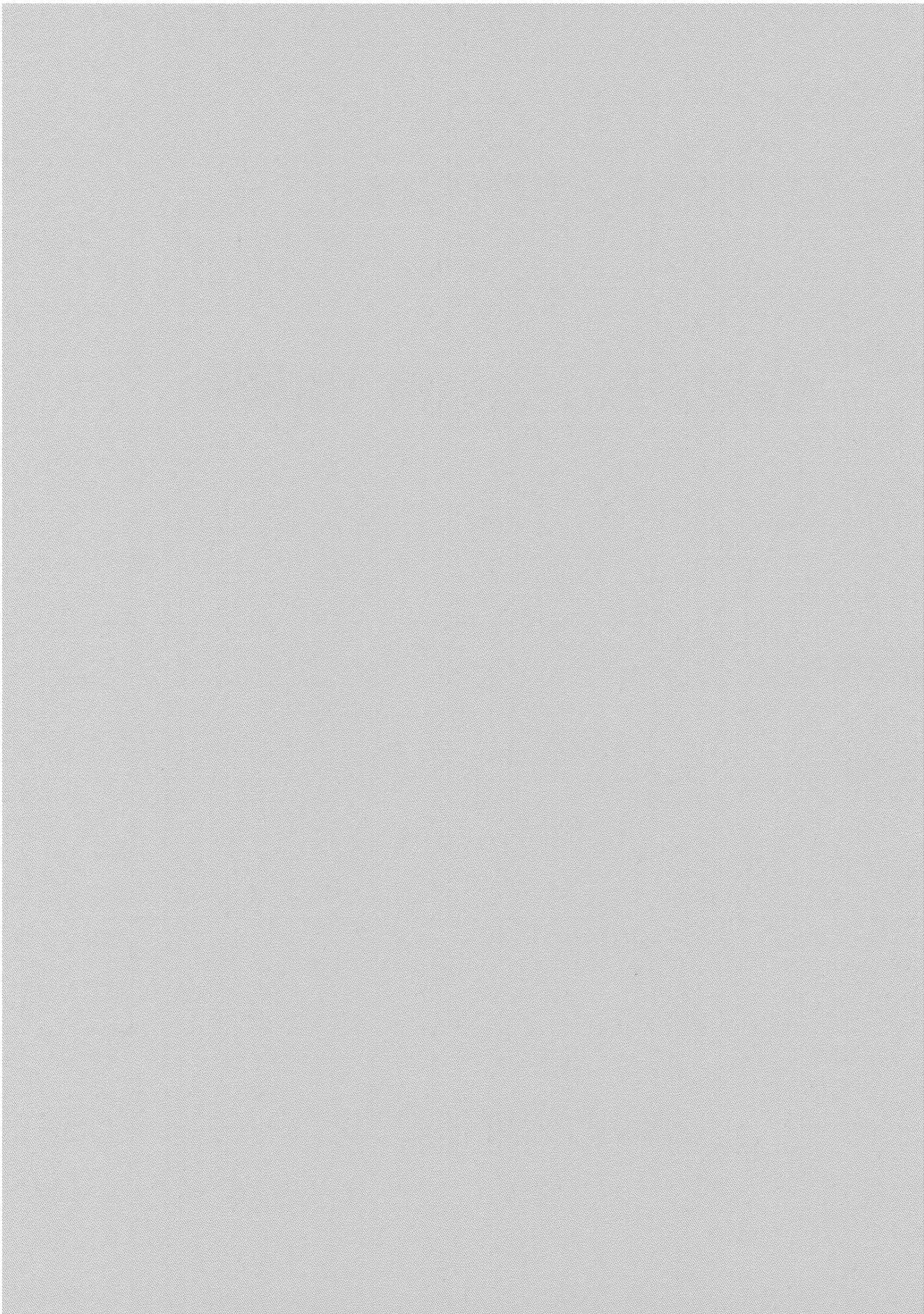
서수웅 



第20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25
II.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29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159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8월 27일 (월요일) 11시 28분

議事日程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8분 개의)

###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요번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이상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위원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제가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30분)

● 위원장 이상일

이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곽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곽정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정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곽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안건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31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8월 28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 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채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 28일 11시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등의 3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8월 28일 (화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 審查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

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혹시 하셨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단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관련해서 이렇게 수렴한 자료가 있으면 좀 그 내용이나 결과를 알려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집행청에서는 김병우 위원님이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요구자료에 대하여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안전별로 주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간략히 들으시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

(11시 03분)

● 위원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평생교육

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학원하고 같이 설명해 드리면 안될까요?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안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의 체육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표창제도를 마련하여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체육표창대상, 체육대회와 체육표창의 종류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

으로써 표창을 수여해야할 때 부상으로 포상금, 연구비, 우승기, 우승컵, 상패, 훈련지원금,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고,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표창대상자 추천방법으로는 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 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이에 준 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하고, 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이에 준 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충청북도교육 행정기관표창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해서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가서 살펴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표창 등에 대한 조례안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제5조를 보시면 표창방법 및 부상이라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3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조문을 읽어본다고 하면 1항은 표창방법 및 부상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2항, 3항은 표창방법하고 부상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2항, 3항은 보기에 따라서 표창이라기 보다는 격려의 뜻이 더 잘 나타나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항을 분리해서 격려의 조로 독립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했구요.

그 다음에 제2항에서 보면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격려금의 지원시기 즉 출전 전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지에서 하는 것이

나 그렇지 않으면 성과에 따른 지원금인가를 밝혀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3항을 보면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맥으로 봐서는 대회전에 격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회 이후 결과에 따른 보상적 격려도 필요한 때가 있을테니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세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를 표창방법과 부상의 조 여기서 격려의 2,3항을 격려의 조로 분리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 제시입니다.

두 번째, 제2항에 격려시기를 명확히 하자는 것, 세 번째, 격려행사의 시기 등을 밝혀두자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소견은 어떠신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요 조례안을 하게 된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요 조례는 되어 있어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달에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

에 소년체전, 전국체전 나가던 선수들한테 격려금을 줄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특별히 요걸 만드는 겁니다.

전국체전에 나가서도 격려금을 줄 수 있고요, 그래 요것은 지금 김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훈련비를 사전에 내보내줍니다. 사전에 내보내주고 수시로 나가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격려금을 못 줬습니다. 훈련비는 줬는데,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격려시기는 항상 체전에 가기 전에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메달 딴 결과에 의해서 격려를 합니다. 금메달은 얼마, 은메달은 얼마, 동메달은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또 단체경기는 1차전에서 주고 2차 전이면 2차전에서 주고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격려도 지금 설명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갔다 와서는 해단식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격려금과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조례로다가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문맥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를 봐서는 그런 게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드렸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다음에 5조가 표창방법 및 부상인데 2항, 3항은 거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격려의 행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리시키는 게 어떠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체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네

● 김병우 위원

퇴임을 며칠 앞두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고 가시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고를 감사드리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많지 않은데 몇 가

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관련조례는 이제서 만드는 거지만 지금까지 사업은 해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근거 조례를 사실은 제정하는 것이죠, 개정이 아니고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안에도 나와있듯이 근거 법령이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깐 벌써 2년 전에 2005년 4월 27일날 공포 시행된 그 법령이 근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14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그거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기준이나 근거를 만들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놨더군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 조항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고 의무조항이었던 것 같은데, 표창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공포 시행된 것은 벌써 2년도 더 전인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왜 조례를 만들어오지 않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금년도 만  
든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니다.

우리 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  
로 교육감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  
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격려를 소년체전  
은 못했습니다. 소년체전 격려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전국체전은 줄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서울시를 중심  
으로 해서 과장들이 협의를 해 갖고 요  
조례를 인적자원부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  
규정을 안을 서울시에서 안을 만들어 갖  
고 지금 전국에다가 그 안을 갖다가 저희  
들이 우리 도에 맞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그전에 해오던 것을  
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겁니다. 해오던 것을 올해 선거 때문에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그 대가성을  
지금까지 주던 건데 안줬다 이겁니다. 그  
래서 요결 주기 위한 그결로 저희들이 만  
든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 김병우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단지 격려금의 문  
제가 아니고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선수  
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표창제도, 그  
러니까 진흥책의 하나로 표창제도를 만들  
어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담아서 시행해야 된  
다라고 했던 말이죠, 의무조항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조례로 만들지도 않고  
근거없이 사업을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근데 요것이 우리 도에서 요번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격려금을 줘야 되  
는데 그게 근거없이 주다가는 걸리겠다라  
고 하는 그런 어떤 선거와 관련되는 격려  
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만  
착안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지금  
이 시기에 어디 교육부라든지 체육부라든  
지 이런 데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  
까?

####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이것은 전국적으로 교육부나 체육부나  
같이 합의가 되어서 만드는 겁니다.

#### ● 김병우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다른 시·도에서도 시  
행령이 공포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조례없이 그냥 해왔다는 말씀입니까?

####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진  
흥법에 의해서 선수들 격려하고 체육진흥  
을 위한 예산을 배시하고 이래 왔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직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배가 된단 말이

에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안을 정해야 된다, 타 시·도를 알아 봤더니 거의 타 시·도도 거의 저희 도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장 말대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과장들이 모여서 조례안을 정하자 해서 전국이 다 같은 입장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과 의회법무담당 이동희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병우 위원

네

● 기획관리과 의회법무담당 이동희

지금까지.....

● 위원장 이상일

저기 마이크를 이용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의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 의회법무담당 이동희

의회법무담당사무관 이동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표창조례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 1월 1일자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구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는 기부제한 기간이 해당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자로다 지방자치법이 개

정되어서 상시 기부금이 제한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다 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문을 내어서 지금 체육진흥법에 이렇게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니 전부 다 그 조례로 마련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금 같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는 겁니다.

● 김병우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걸로 마감을 하고요. 이후에 다룰 조례에도 그 문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이 선거법과 관련 되는 격려금이나 이런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사안이 없었더라면 기존에 있는 표창조례나 이걸로도 국민체육진흥법이 진흥의 방안으로 두고 있는 표창제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인가 요거를 지금 여쭙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위 법령에 어떤 조례로 위임을 해놓은 사안들이 각 지자체들에서 조례를 만드는 기간이 좀 늦어 가지고 실질적인 시행이 늦어지는 사례들이 또 있더라 말이죠. 그걸 그 다음 사안에서 또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중에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게 일단은 요 조례가 체육진흥과 관련된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체육부분에 특별한 표창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나라의 법령 중에 진흥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법률들만 해도 35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령도 그만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육당국에서 집행의 책임이 있는 교육과 학예에 관련되는 법만 봐도 무슨 과학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뭐 이래 거의 10가지에 가까워요.

근데 이런 진흥법들이 진흥책의 하나로 제일 손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상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큰돈들이지 않고 그걸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요 조례 말고는 사실은 상을 그렇게 남발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다른 진흥법들의 그런 표창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물론 상위 법령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혹시 다른 분야와의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주는 것도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씁니다.

전국대회 무슨 개별로 나가서 종별대회에 나가 우승했을 때는 우리가 축전도 쳐주고 하기는 합시다만 지금까지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은 그 대가성을 엘리트 체육에 대한 대가성을 지금까지 쪽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등·2등, 금메달·은메달·동메달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비를 주고

### ● 김병우 위원

남발은 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표창을 할 수 있는 대회도 지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뿐 아니라 무슨 다른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학이나 무슨 또 다른 분야에 어떤 교육진흥과 관련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체육은 사실은 조례 까지도 만들 정도로 이렇게 표창도 하고 지원이나 격려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이 혹시 다른 분야에는 소외감이나 이런 것을 들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제가 볼 때는 다른 분야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 중에 이중표창의 금지 부분이 일단 우리 표창조례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상을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이렇게 중복 수혜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동일 사안이라 하더라도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신기록을 세우면 당연히 장관표창 나올 테죠,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교육감도 주고 교육장도 주고 이렇게 표창권자가 다르니까 다 줄 수 있다는 얘긴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그것은 소속이 다르면 따로 주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남발은 하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중표창의 금지일 경우에 취지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표창보다도 격려금을 서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표창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표창은 예를 들어서.....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표창은 저희들은 저희들 조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 김병우 위원

물론 그렇겠죠.

나중에 이것이 인센티브로 특별로 이렇게 비치지 않으려면 중복 수혜의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표창은 표창권자가 다른 격이 다른 여러 분들에게서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평정하는데는 최상위 표창만 인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지금 체육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또 일부 조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지금 조례안 내용의 조절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곽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2항에 대하여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를 “체육대회 출전 선수(팀)에게”로 수정하고, 안 제5조3항에 대하여 “체육대회에 출전하는”을 “체육대회 출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곽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체육진흥및표창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

조2항에 대하여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를 “체육대회 출전하는 선수(팀)에게”로 수정하고, 안 제5조3항에 대하여 “체육대회에 출전하는”을 “체육대회 출전”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51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7년 3월 23일로 개정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 학원단위 시설기준 신설, 학원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신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제한 신설 그리고 학교 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은 평생교육기관 및 학원 등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규정과 수강생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등의 가입금액 최저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최저한도는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예고를 거쳐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학원 단위시설 기준 신설은 변화된 학생의 체격향상 및 학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강실 일시 수용인원을 1제곱미터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조명기준은 150룩스에서 300룩스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은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 학원의 종류가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학원으로 구분됨에 따라 신설된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21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설비교구

기준입니다.

기본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면적은 변함이 없으며 보충학습은 종전에 60제곱미터 이상에서 청주시지역은 90제곱미터 이상, 그 외에 영세한 학원이 많은 기타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음악교습과 정학원의 교구기준은 종전의 기준인 주요 시설용 악기 5대 이상에서 6대 이상으로 신설 강화하여 수강생들의 교육실습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은 수강생의 안전·보건·위생 및 난립방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 동 학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제한규정을 조례개정안 제2조의5, 제2조의6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학교 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23시를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입시준비의 현실을 반영하여 24시까지로 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박노성 위원

교육위원 박노성입니다.

안 제2조의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소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으로 최저한도액을 정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수강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경우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고발생 시 학원 또는 교습소는 수강생들의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험 등의 가입 최저 한도금액을 설정함으로써 수강생의 안전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사고수습 및 분쟁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 되는 바, 다만 안전사고에 대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들의 책임보장을 위하여 의무적인 보험이나 공제회가입 및 손해배상금액 최저 한도금액을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대부분 민간보험에 의존하던 학원 등이 보험

금을 상향조정하거나 추가 가입해야 하는 등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입 최저한도 금액 설정에 따른 학원별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1사고당 10억 보험료는 최고가 5만 8,38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로는 만 5,230원입니다.

● 박노성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학원별 연간 보험료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제가 담당사무관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평생교육담당사무관 류재선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사고당 10억원 이상 됐을 때 한 학원당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최고가 5만 8,380원부터 최저 만 5,230원까지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얘깁니다.

● 박노성 위원

그러니까 10만원 미만으로 전부 해당된

다 그런 말씀이죠?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네, 맞습니다.

● 박노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박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 서수용입니다.

안 별표1에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분야 산업기반기술계열에 나와 있는 교습과정이나 산업운영기술에 나와 있는 교습과정이 시설규모는 별표2와 같다고 명시하셨는데, 별표2에 살펴보면 실제로 별표2에는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설비 및 교부 기준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나 하면 교습과정에 나와 있는 조선과정이나 교통, 그 다음에 산업운영기술계열의 포장 이런 것이 별표2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별표2와 같다고 하고 별표2를 살펴보면 그게 안나와 있는데, 그 별표2와 같다고 한 것은 별표2를 거기다 명시할 때 확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빠져

도 별표2와 같이 시설규모를 한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평생교육담당사무관 류재선입니다.

당초 시행령에 위임됐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다 하다 보니까 저희 도내에 교습과정이 없는 조선, 교통, 포장관계 그냥 들어가서 있어 가지고 저희 작업하는 과정에서 미처 그것을 조정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는 조선, 포장, 교통관계는 삭제를 하더라도 저희 조례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별표2와 같음을 그대로 문맥 살리고 그런 것이 없는데도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그 뒤에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게 유사 기준에 맞는 교습과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없더라도 학원을 신청할 때에는 유사한 교습과정을 적용해서 학원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개정 조례안 7쪽을 봐 주시면 저는 제2조의3, 4, 5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례인데 조례 제2조의3을 살펴보면 강의실 수용인원이 1제곱미터당 1.2인에서 1인으로 넓게 조정이 되었고, 또 45쪽에 별표5에서 보면 조도가 기존 150룩스에서 300룩스로다가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강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보건을 위해서 만족도를 제고하는 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영세한 기존 학원에서는 이렇게 규제에 따른 추가 부담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수강료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 학원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2조의4에 신설된 교습과정별 시설규모를 보면 13쪽의 별표1입니다. 입시단과반과 종합반의 시설기준을 시 지역은 150제곱미터, 기타는 90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절히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강

의실 면적의 상향 규제에 대한 추가비용, 건물, 임대료, 관리비 등 부담이 수강료에 전가되어서 인상의 요인이 되겠다는 염려가 생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저희들이 1평방미터에 대해서 1.2인에서 1인으로 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45평방미터에는 약 소요되는 것이 2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넓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조사한 학급설립시 90평방미터 임대료가 평당 25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은 1억 2,500만원 정도, 실내 인테리어가 한 2,000이고 그리고 기타 기자재도 200만원, 100만원 실제 인테리어가 그렇게 되고, 60평방미터 임대료는 250만원에 평당 걸리고 임대보증금이 1억원, 실내 인테리어가 역시 100만원, 기자재도 1,000만원, 500만원정도 든다고 그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강료 인상요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평생교육담당사무관 류재선입니다.

지금 현재 강화된 기준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중인 학원에서는 기존 그대로 가도 과거에 적용된 그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제곱미터당 1억이라는 것은 아이들 체격이 커졌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300룩스로 하면서 전등이 추가 설치되는 것은 저희 시설팀에서 알아보니까 재료비 10만원, 인건비 10만원 해서 45제곱미터에 대해서 한 20만원 정도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근데 20만원은 시설할 때 얘기이고 그걸 운영할 때는 배 이상 전기요금이나 나오죠.

그래서 내 얘기는 이왕에 되어 있는 기존의 학원에는 상관없다고 신설되는 학원에만 적용된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기존 학원에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수강료 인상요인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쪽을 제2조의5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

에 준 하는 학교의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  
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라든지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방학중에는 아이들이 학교 교육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생  
각이 됩니다. 방학기간 동안까지도 이런  
제한을 두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평생교육담당사무관 류재선입니다.

제2조의5 내용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원에 대한 제한은 아니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공교육이  
말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 학생은 수용할 수 없고, 재수생,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저희가 재학생들까지 다 풀어서 숙  
박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넘겨서 그래서  
거기서 수강할 수 있다는 오히려 아이들  
의 건강관리에 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해  
서 생각되어서 제한을 한 겁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는  
초·중·고학생은 못 간다, 거기 수강신

청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네

● 김부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와 상위법령과의 시차문제를  
아까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  
서도 요 상위법령이 작년 9월에 공포되고  
올 3월에 시행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  
니다.

요렇게 조례를 바꾸게 된 것들이 실무  
선에서 확인 가능하시죠, 그렇죠?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예

● 김병우 위원

그런데 보통 법률 공포하고 시행 시점  
을 보면 대부분 법령에 따라서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  
부분은 3개월 후 또 6개월 후 이렇게 유  
예기간을 두면서 시행일자를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시행을 늦추었는데 공포 후에 그 취지가 바로 하부 규정 같은 것을 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인가 그 취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조례는 시행된 지 벌써 6개월이 가까이 지난 이제 와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좀 늦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이 방금 오늘 이렇게 발의된 안 중에도 3개중에 2개가 이미 조례가 재 개정이 뒤늦어지는 건데, 우리 집행청에서, 물론 조례 제정 책임은 우리 의회에 있다고 봅니다. 발의권도 있고 뭐 의결권도 있으니까, 근데 집행청에서 사실을 법령을 검토해서 그때 그때 시점을 놓치지 말고 발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김병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저희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독단적으로 저희 도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와 협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금까지 늦춰졌고, 그리고 일단 법이 시행된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어 가지고 3월 달에 시행이 됐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게 된 것입니다.

● 김병우 위원

원래 절차가 법이 시행된 다음에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 김병우 위원

시행된 뒤에야 조례를 준비하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그전에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물론 작업은 그전에 할 수 있겠죠.

● 김병우 위원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포 후에 시행까지의 일정을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유예시키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또 준비가 더 필요한 부분은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조항별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국적인 지침이나 통일안 같은 것을 서로 협의하는 일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중앙부처의 책임이나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자체의 그런 법률적인 입법 위임을 받았으면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그걸 미리 준비를 해서 시행되기

전에 조례도 정비해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앞으로 관련된 법규가 있으면 시일을 놓치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리고 요거는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 습니다만 요새 한참 관심이 많이 되는 애기라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 우리 조례에 학원강사들 자격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 더라고요. 그리고 학원마다 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위 허위학력 문제가 이슈가 많 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 은데 집행청에서 혹시 점검을 했거나 지 도한 사례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평생교육담당사무관 류재선입니다.

올 5월 교육부 정기종합감사 할 때 샘플로 해서 일정 수를 조사해서 학력위조 관계를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이 나왔고요, 저희가 8월 중순에 지역교육청에 다 지시를 해서 이 달 말까지 학력위조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서 결과보고를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특정 시기에 감사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원래 채용 강사들의 자격요건을 관할 교육청에서 자격증명 서류를 받게 되어 있죠?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맞습니다.

● 김병우 위원

제출하게 되어 있고 학원 측에서는 그 결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 이에 혹시 위조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가 되는 것인데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본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 이것하고 실제하고서 다르게 되어 가지고 위조가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학원에서 강사에 대한 등록을 받을 때 감독청이나 직접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걸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에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개정안에 시설관련 또 그리고 학생들 보장관련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될만한 것이 교습시간과 관련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원교습시간과 관련한 이 사안이 현안으로 되게 된 경과를 제가 살펴보니 까 이렇더군요.

지금 현재까지 조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 서울, 대구, 강원, 경북 그리고 우리 충북 이렇게 5개 시·도입니다. 조례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을 해둔 곳이 근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서도 그렇겠지만 서울 같은 데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4년도 10월 달에 서울강동교육청의 단속에 걸렸던 어떤 학원에서 단속 근거 서울시 조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조례다라고 행정법원에다가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지방자치법 15조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상위법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울시 조례가 무효다, 그리고 그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취지로 소송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2005년도 4월에 서울행정법원이 학원업자 말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소송제기가 되면서부

터 교육부는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교육부는 조례로 시간제한을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개정안에 담아 가지고 국회에 내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일단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벌고 계속 단속을 해나가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06년도 9월 달에 그 법이 통과되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조례에다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취지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16조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수업 일상 일과와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원 측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할 때도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학습권을 보호해 달라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고, 자기들 직업수행과 영리를 내세워서 영업시간을 늘려달라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일단은 충북의 경우에 이렇게 보면 충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찌감치 제한을 규제를 하면서 사실은 학생들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고려를 했던 것 같아

요. 근데 이제 와서 다른 시·도들도 다 규제시간을 두어라라고 조례에 담으라고 하니까 우리 충북은 역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고 제한을 할 때는 16조 뒤에 보니까 단서조항에 학부모들이나 관련단체들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또 이렇게 의무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고 여쭙었는데 결과를 내셨네요.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는 봤습니다만

●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 류재선**

평생교육담당사무관 류재선입니다.

입법예고 했을 때 일부 의견이 24시까지 의견이 들어 왔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7월 달에 검토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수치로 나왔는데 이 건 전수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표준상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조례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타 시·도하고 저희 도하고 비교 안할 수 없고, 그래서 타 시·도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시간제한을 갖는 데가 부산, 대전, 경남은 아직까지 시간제한규정을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23시까지 되어 있는 데가 서울, 전북, 충북 해

서 3개 시·도이고요, 24시까지 되어 있는 데가 나머지 10개 시·도가 24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에 가뜰이나 도세도 열악한데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주어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경쟁에서 뒤떨어지게까지는 제도적으로 막으면 부담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인 이런 부족한 공부시간이라 생각되어서 24시까지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대로 현행대로 가고 그래도 고등학교는 입시가 목전에 다다랐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한해서 24시까지로 만든 것입니다.

● **김병우 위원**

지금 집행청에서 요걸 낸 것은 사실은 우리 내부적 필요보다는 위에서 법 개정이 이렇게 되고 또 교육부에서도 요걸 제한규정이 없는 시·도들도 다 조례에 제한규정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에 제한을 두어왔고 이러니까 제한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고 그렇다는 얘기죠. 집행청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수렴 가능하다

고 봅니다.

그런데 관련법에서는 반드시 학부모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거는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하셨죠, 조사를 해보니까 초·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 학부모들이 60%가 반대를 했네요. 23시로 의견을 냈네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관련단체들에서는 전교조가 반대를 했고 그 이유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아는 이유들 당연히 아는 얘기들 됐고, 그 다음에 교육청노조에서는 대부분의 교과교습학원들이 23시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23시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걸 넘기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적인 고려보다는 행정적인 고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인하자 이런 얘기인데, 교육적인 견지에서 보면 이거는 공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를 사교육을 부추기면서까지 행정편의를 도모하자 이런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학부모들은 전적으로 시 단위뿐 아니라 군 단위 모든 곳에서 대부분 6 대 4 정도로 23시를 택하고 있

어요 고등학생까지도 초·중학교는 더 큰 비율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4시로 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 타 시·도 사례들을 말씀씀을 하셨는데, 타 시·도도 보니까 서울하고 전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3시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대로 23시로 규제를 하고 또 나머지 시·도들 중에서는 24시로 제한 곳이 많이 있기는 있네요.

근데 이것도 그 교육청 집행청의 생각이 이지 이게 통과된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충북에서도 24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60%가 23시로 원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전국적으로도 지금 많은 시·도들이 제한을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24시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그거 아닐 거라는 것이고, 이후에 타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교육위원회에서 몇 시로 규제할는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집행청에서는 그것을 전국적인 추세가 24시로 규제시간을 두는 것처럼 이렇게 당연시하면서 학부모들의 견해도 일단은 무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참고사항이 되겠죠. 그러나 자기 중심을 잃으면 안됩니다. 자기 집 아이 교육을 옆집 아줌마가 망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

부모들의 학력에 대한 불안심리 그리고 부화뇌동하는 어떤 경향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옆집 아이가 학원 수강한다고 그러고 밤 12시 넘어서 잠 안든다고 그러면 아이도 불안하고 학부모도 불안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아이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옆집 아이를 보고 판단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보고 내가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교육당국은 당연히 교육적인 효과를 우선해야 되고 교육원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교육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잃으면 안되고 더더구나 사교육 시장의 논리를 부추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면 한 밤 중에라도 먹을 걸 먹어야 되죠, 공부가 고프면 밤늦게라도 공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든 공부가 고프든 고프든 학생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지 규제할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식은 건강에 오히려 해롭고 비만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또 심야에 탐식하려는 아이가 있으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심야학습에 지치고 지들어

가는 아이들은 재우는 것이 부모나 교사가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옆집 아이 야식시킨다고 자야할 내 아이한테 억지로 밥 먹일 부모 없죠.

지금 여기 나타난 60%가 넘는 학부모들이 23시로 제한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속에 바로 이 부모들의 이런 심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이미 그렇게 내 아이 수준을 안다는 거죠.

그 학습이라는 것이 배울 '학'자에 익힐 '습'자입니다. 그게 이제 학습이론 중에 보면 배우는데 한 시간 걸린다면 익히는데 세 시간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과연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해 봅니다. 배우는데 한 시간 걸리면 아이들에게 3시간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자기 주도적으로 익힐 시간이 부족한 것이지 배우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습 부족보다도 차라리 수면부족이나 휴식부족이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하품 나는 성적 알고 보니 수면부족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 기사를 쓴 것이 수면학회 발표를 근거로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던 어떤 분이 수면학회는 다 애들 재우자는 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의 수면부족이 학습효율 떨어지는데 결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수면학회에 발표한다고 해서 애들 다 재우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교원단체들에서 애들한테 놀 시간주자 휴식시간주자 이렇게 하니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가르치기 싫다는 것 아니냐 선생님도 애들이랑 다 같이 놀고먹자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거 아니죠.

그래서 심야학원교습을 연장하는 것이 학력신장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실증적 근거가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심야학원 개방을 늘리는 것은 학습부담이나 불안을 또 부채질하고 그럼으로써 그 시간 자체의 학습효과뿐 아니라 그 다음날의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게 상식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 게 언제였습니까? '96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제한을 시간을 둔 게 언제였어요? '99년도 였죠.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습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 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사상 최대의 학력신장을 이루었다 발표했잖아요, 자랑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육청이 일찌감치 23시로 규제해서 제한 없는 다른 데보다도 차라리 공교육을 충실하게 했다 이렇게 저는 자랑할만한 거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와 가지고 왜 늘려야될 정도로 학습시간도 더 필요하고 학력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청에서 스스로 집계하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이런 근거까지도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시책 아닌가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청이 집행청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부모들 이상의 어떤 강박관념을 가져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굳이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규제는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래서 풀어주자 이러면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맡기면 그만이죠.

그러면 사실은 집행청이나 우리 교육위원회도 우리가 원망들을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면피용 생각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견지에서 정말 이것이 아이들에게 학원수강시간만 늘리는 것이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 안만드느냐 보다는 우리 집행청의 실무자뿐 아니라 우리 교육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말 내 아이 학력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정말로 책임있게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짚어나가야 될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일

저기 답변은 필요없으십니까?

● 김병우 위원

네

● 위원장 이상일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서 오자, 탈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좀더 조례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1항 뭐 이런데 항이 필요없는 걸 항을 기록한 부분도 발견이 됐고요, 또 몇 대 이상 그러는데 그냥 그 앞에 숫자가 빠져서 이게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별표기준에 그런 부분도 발견이 됐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이 없는데 항을 인용한 부분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할 시간을 가져야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지금 곽정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시는 거죠.

● 간사 곽정수

네

● 위원장 이상일

수정동의를 위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잠깐, 저기.....

지금 사소한 어떤 오·탈자 같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직접 이 자리에서 검토하지 않고 정회를 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 간사 곽정수

아니 근데 회의록에 남으니까 담당자를

불러다가 거기서 확인을 하고 바로 하는 게 더 진행상 좋을 것 같아서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당초 시간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집행청의 임명장 수여에 참석하느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서 그것을 또 답변을 듣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회선포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 위원장 이상일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곽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곽정수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인용조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4 제4항의 “제2조의3제1항제5호”를 “제2조의3제5호”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의 “영 제7조제2항, 영 제12조

및 제2조의5의”를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조의5의”로 수정하며, 별표1 학원의 시설규모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숙학원 교습과정 시설규모의 “별표4와 같음”을 “별표3과 같음”으로 수정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산업기반기술계열의 교습과정 중 “조선”, “교통”을 산업응용기술계열의 교습과정 중 “포장”을 삭제하고, 별표2 제목에 관련조항인 “(제2조의4 제3항 관련)”을 삽입하고, 별표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15. 환경 교육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대 이상”을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각 1대 이상”으로,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를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 이상”으로 하고, 19. 이·미용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나. 설비 및 교구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종 이상”을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 1종 이상”으로 수정하며, 별표3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5 제1항 관련)”을 “(제2조의5 제2항 관련)”으로 수정하고, 별표4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관련)”을 “(제2조의3 제4호 관련)”으로 수정하고, 별표5 제목의 관련

조항인 “(제2조의3 제1항 제5호 관련)”을 “(제2조의3 제5호 관련)”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곽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의4제4항의 “제2조의3 제1항제5호”를 “제2조의3제5호”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의 “영 제7조제2항, 영 제12조 및 제2조의5의”를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

조의5의”로 수정하며, 별표1 학원의 시설 규모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숙학원 교습과정 시설규모의 “별표4와 같음”을 “별표3과 같음”으로 수정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산업기반기술계열의 교습과정 중 “조선”, “교통”과 산업응용기술계열의 교습과정 중 “포장”을 삭제하고, 별표2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4제3항 관련)”을 삽입하고, 별표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15. 환경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대 이상”을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를 각 1대 이상”으로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를 “(9)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 2대 이상”으로 하고, 19. 이·미용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나. 설비 및 교구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종 이상”을 “(3) 안면기(스팀, 적외선, 자외선) 각 1종 이상”으로 수정하며, 별표3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5 제1항 관련)”을 “(제2조의5 제2항 관련)”으로 수정하고, 별표4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관련)”을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관련)”으로 수정하며, 별표5 제목의 관련조항인 “(제2조의3 제1항 제5호 관련)”을 “(제2조의3 제5호 관련)”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시간을 현재의 23시에서 24시까지로 완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대와 우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13시 11분)

●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

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개정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116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으로 정한 대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는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를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 교육규칙으로 제정하여 조례폐지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간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곽정수,

위 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0 출석공무원 : 5명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7. 9. .

위원장 이 상 일 李相一



(별첨 1)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0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7. 8.27.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7. 8.28. (화)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